

제 15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안번호	제 3 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일자	2022. 5. 13.	
공개여부	공 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 변경(안)

제 출 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유 국 희
제출일자	2022. 5. 13.

1. 의결주문

-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시 부가된 조건을 아래의 '변경내용'과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제출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신청 건에 대해 2021년 7월 9일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허가를 의결하였으며,
 - 동시에, 「원자력안전법」 제9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아래와 같이 조건을 부가하였음
- ①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피동축매형수소재결합기(PAR)에 대하여 2018년 9월 세라컴社 PAR에 대해 실시한 독일 THAI 시설에서의 수소제거율과 축매이탈 등 실험과 동등·유사한 실험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조속히 실시하여 2022년 3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되, 실험 시 신한울 1호기에 납품된 PAR와 동일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필요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
- ②, ③, ④ < 생략 >
-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위 ①조건사항의 이행을 위해 KAERI와 PAR 실험용역 계약을 통해 실험을 추진하여 왔으나, 조치기한 내 이행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2022년 3월 24일 PAR 실험 최종보고서 제출 조치기한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며, 2022년 5월 3일 보완 신청을 함 [붙임 참조]

-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안전의 구분 등) 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시 부가된 조건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3. 변경내용

-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시 부가된 조건 중 ①PAR 실험과 관련한 조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기존	변경
<p>①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피동축매형수소 재결합기(PAR)에 대하여 2018년 9월 세라컴사 PAR에 대해 실시한 독일 THAI 시설에서의 수소제거율과 촉매이탈 등 실험과 동등유사한 실험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조속히 실시하여 2022년 3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되, 실험 시 신한울 1호기에 납품된 PAR와 동일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필요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p>	<p>①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피동축매형수소 재결합기(PAR)에 대하여 2018년 9월 세라컴사 PAR에 대해 실시한 독일 THAI 시설에서의 수소제거율과 촉매이탈 등 실험과 동등유사한 실험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조속히 실시하여 2022년 6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되, 실험 시 신한울 1호기에 납품된 PAR와 동일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필요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p>

[한수원 공문]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PAR 실험 최종보고서 제출) 변경신청 보완 제출 ('22.5.3)

친환경 에너지 기업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수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경유)

제목 신한울1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PAR 실험 최종보고서 제출) 변경 신청 보완 제출

1. 관련문서

- 가. 한수원 문서번호 원건(인)-2096 “신한울1호기 운영허가 조건 PAR 실험 최종 보고서 제출 조치기한 변경신청”(22.3.24) .
-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서번호 원자력심사과-297 “신한울1호기 운영허가 조건 (PAR 실험 최종보고서 제출) 변경신청에 대한 보완 요구”(22.3.30)

2.. 상기와 관련하여 신한울1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PAR 실험 최종보고서 제출) 변경신청(22.3.24)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완하여 제출합니다.

가. 신한울1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신한울1호기에 설치된 피동 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의 성능을 재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의 SPARC 설비를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이를 위해 실험기관인 KAERI 및 제작사인 KNT와 실험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신한울1호기에 설치된 PAR를 KAERI에게 제공하였으며, 실험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실험용역 계약변경을 하는 등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신한울1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에 명기된 조치기한인 '22.3월까지 최종 보고서 제출이 불확실하여 조치기한 변경신청(22.3.24)을 하였으며, 변경하고자 하는 조치기한 미적시 등 미흡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22.3.25, 제155회 원안위)

라. 이후, KAERI로부터 제작사 시험설비를 통한 추가실험 일정 및 보고서 작성 일정 등을 전달(22.4.11) 받았으며, 이를 반영한 PAR 실험 최종보고서 제출 관련 조치기한 연장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제반사정을 고려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요청드립니다.

○ 요청내용 : (변경전) 2022년 3월까지 → (변경후) 2022년 6월까지. 끝.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차장 부장 전결 2022.5.3.

협조자

시행 원건(인)-3107 (2022. 5. 3.) 접수 원자력심사과-412 (2022. 5. 3.)

우 38120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 http://www.khnp.co.kr

전화번호 팩스번호 / 비공개(5)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한수원 공문]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 PAR 실험 최종보고서 제출 조치기한 변경 신청 ('22.3.24)

친환경 에너지 기업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수신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원자력심사과장)
(경유)

제목 신한울1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 PAR 실험 최종보고서 제출 조치기한 변경 신청

1.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서번호 원자력심사과-750('21.7.9) "신한울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 알림" 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하여 신한울1호기 운영허가시 부과한 조건사항 중 피동축매형수소재 결합기(PAR)실험 최종보고서 제출 건에 대해 아래 사유로 제출 기한 변경을 신청합니다.
 - 신청사유 : 운영허가 조건사항 조치기한내 이행 불확실
 - 원자력안전위원회(제149회)에서 한수원을 배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PAR 실험점검 소위원회'가 실험과정을 점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수원은 실험 일정?조건?결과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임. 끝.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차장 부장 전결 2022.3.24.

협조자

시행 원건(인)-2096 (2022. 3. 24.) 접수 원자력심사과-278 (2022. 3. 25.)

우 38120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 http://www.khnp.co.kr

전화번호 팩스번호 / 비공개(3)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 안전 담당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	
최수진 과 장	(02) 397 - 7216
정하규 사무관	(02) 397 - 7218